

의안 번호	1301
----------	------

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6. 11. 11.(금)
-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6. 11. 16.(수)
- 라. 위원회심사 : 2016. 11. 29.(화)

2.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명 개정(2016. 1. 25.)에 따라 기존 「지진재해대책법」 법령명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명 반영(안 제1조)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나. 별지 서식변경(안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 서식 중 각각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 별지 제2호 서식 중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Tel : 052-290-3870)”을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Tel : 052-000-0000)”으로 개정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근거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5. 검토의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명 개정(2016. 1. 25.)에 따라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